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8일, 정 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8.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설치·운영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 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칙(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교육 이수 등의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연간 최소 8~12시간 정도이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보수교육 미이수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형벌 규정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